#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4

발의연월일: 2021. 5. 26.

발 의 자:조오섭ㆍ이규민ㆍ이학영

최종윤 · 송재호 · 민형배

송갑석 • 주철현 • 문진석

서영석 · 김승남 · 김영배

오영환 의원(13인)

###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제7조).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으로, 영아유기는 1달에 평균 10건, 영아살해는 1달에 평균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영아유기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비적출자 또는 장애아 출산,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미 우리 형법이 이

를 영아유기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272조)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도록 지원하며, 익명으로 출산 또는 지원기관에 인도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기임산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4조).
- 나.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함(안 제5조).
- 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익명출산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익명인도를 통해 위기임산부 등의 양육을 지원함(제18조).
- 사. 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법률 제 호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친권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로서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 2. "익명출산"이란 「모자보건법」 제8조, 「의료법」 제22조 등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임산부의 임신·출산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출산을 말한다.
  - 3. "출생아"란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 4. "익명인도"란 출산 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람

- 이 양육거부·양육곤란 등의 사유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지원기관 에 요청하고 미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원기관"이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요양 및 출생아의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지정의료기관"이란 익명출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7. "보호시설"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8. "출생기록"이란 출생아에 대한 성명·성별·본·출생일시 및 장소, 부모의 유전적 질환 기타 건강정보, 익명출산에 대한 상담요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임산부 및 출생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 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위기임산부 지원센터

- 제5조(위기임산부 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및 출생아의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위기임산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그 밖에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
  - 4.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미성년후견신청,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 5. 기타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기임산부 지원 신청) 임산부는 누구든지 경제적·심리적·신 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 여부에 관하여 갈등을 겪 을 경우 지원센터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위기임산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에서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출산을 포기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그 효과
- 2.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정책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 및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관련 지원 정책
-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
- ③ 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필요로 할 경우 보호시설 입소 등 주 거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주거·생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3장 익명출산 신청 및 지원

- 제8조(익명출산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익명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에 익명출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임산부(이하 "익명출산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일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1. 익명출산의 절차, 요건 및 효과(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다)
- 2.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의 내용 및 그것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 3. 생부의 권리
- 4. 익명출산 후 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5. 익명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내용
- 6. 익명출산의 경우 자녀가 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모는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 7.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 요건 및 효과(가 족관계증명서 기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신청 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2. 생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부모의 유전적 질환 기타 건강에 관한 정보

- 4. 자녀의 출생 경위 및 익명출산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5. 모자 출생아의 성명 및 본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및 본
- ④ 지원센터는 익명출산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익명출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 익명출산 확인서 작성 및 발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익명출산 지원) ① 익명출산 신청인은 상담시 안내된 지정의료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산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익명출산 신청인이 안전하게 익명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익명출산 신청사실 및 확인사실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지정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하여 익명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정의료기관은 익명출산 신청인이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를 지원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생사실을 지원센터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센터는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사실 및 확인사실 통보, 진료기록부 작성, 출생증명서 송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미성년후견인 지정 등)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제9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가정법원에 출생아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민법」 제932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후견 인이 선임될 때까지 출생아의 친권을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 다.
- 제11조(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등)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는 지원센터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원센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2. 자녀의 익명출산 사실
-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4. 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 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③ 익명출산 신청인이 「민법」 제7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자의 성과 본을 창설한다.이 경우 성과 본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781조제3항에 따른다.
- 제12조(익명출산 신청인 및 출생아에 대한 보호 등)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익명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출생아를 인도받아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호에 따른아동일시보호시설에 출생아를 인계하거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출생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13조(익명출산 신청인의 실권회복청구) 신청인은 「민법」 제926조 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에 대한 입양심판 또는 친양자입양심판이 확 정되기 전까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① 익명출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

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15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15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익명출산 신청인이 공개청구에 금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원행정처가 교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출생아의 출생기록 열람권) ① 출생아가 성년에 달한 때에는 지원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상담일지, 상담사실 확인서, 출생증명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생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익명출산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 등) ① 출생아는 성년에 달한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

- 는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교부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부 청구, 청구사실 통보, 교부 금지 신청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출생아에 대한 친부의 인지 등) 출생아의 친부는 「민법」 제8 55조제1항에 따라 인지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에 대한 친양자입양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익명인도 신청 및 지원

- 제18조(익명인도 신청) ①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출생아의 생부, 생모 또는 그 배우자 등은 지원센터에 익명인도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익명인도를 신청한 사람(이하 "익명인도 신청인"이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고 양육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익명인도의 절차, 요건 및 효과

- 2.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3.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의 내용 및 그것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 4. 익명인도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5. 익명인도의 경우 자녀가 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모는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 6.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 요건 및 효과(가 족관계증명서 기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정책
-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 및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관련 지원 정책
- 9.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
-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신청 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2. 출생증명서(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생부 또는 생모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부모의 유전적 질환 기타 건강에 관한 정보
- 5. 자녀의 출생 경위 및 익명인도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6. 생부 또는 생모가 출생아의 성명 및 본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및 본
- ④ 지원센터는 익명인도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익명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 익명인도 확인서 작성 및 발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익명인도 통보) ① 지원센터는 제18조에 따른 익명인도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사실을 지원센터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지정 등) ① 제19조제1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제92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출생아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제1 항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민법」 제932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제3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친권을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1조(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등)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지원센터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익명인도 신청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원센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익명인도 신청사실을 통보할 경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 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4.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5.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③ 익명인도 신청인이 「민법」 제7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자의 성과 본을 창설한다.이 경우 성과 본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781조제3항에 따른다.
- 제22조(익명인도 신청인 및 출생아에 대한 보호 등) 제20조에 따라 출생아의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익명인도 신청인으로부터 출생아를 인도받아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호에 따른아동일시보호시설에 출생아를 인계하거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출생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23조(익명인도 신청인의 실권회복청구) 익명인도 신청인은 「민법」 제926조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에 대한 입양심판 또는 친양자입양심 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익명인도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15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익명인도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익명인도 신청인이 공개청구에 금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원행정처가 교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익명인도된 자녀의 출생기록 열람권) ① 익명인도된 자녀가 성년에 달한 때에는 지원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상담일지, 상담사실 확

- 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생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익명인도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익명인도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 등) ① 익명인 도된 자녀는 성년에 달한 경우 제2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사 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익명인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익명인도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교부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부 청구, 청구사실 통보, 교부 금지 신청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원센터의 장,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사람
  - 2. 지정의료기관의 장,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사람
  - 3.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사람
-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